●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-42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를 고시함에 있어,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30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화평법")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의 분류·표시 사항을 고시하고, 화평법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·표시 사항을 고시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,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
 - "트리플루오르화 인" 등 1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유번호 "2024-1-1213란"부터 "2024-1-1223"란까지 신설
- 나.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
 - 가목 유독물질 3종(고유번호 "2017-1-785"란, "2018-1-837"란, "2021-1-1068"란)의 분류표시 개정
 - 가목 유독물질 1종(고유번호 "97-1-145"란)의 수생환경 유해성에 해당하는 그림문자(GHS09) 추가
 - 가목 유독물질 2종(고유번호 "2017-1-762"란, "2022-1-1095"란)의 하위이성질체 CAS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
- 다.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(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)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 (부칙)

3. 의견제출

-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4년 0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(화학물질등록평가팀, 전화 032-560-7139, 모사전송 032-568-20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 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본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www.nics.me.go.kr) 내 「법령정보-행정예고」에 게재되어 있음

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 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, 제10조제3항, 제24조, 제28조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20호, 2024. 04 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 2024년
 월
 일

 화학물질안전원장

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
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별표 4 가목(유독물질)의 고유번호 "97-1-145"란, "2017-1-762"란, "2017-1-785"란, "2018-1-837"란, "2021-1-1068"란 및 "2022-1-1095"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, 고유 번호 "2024-1-1212"란 다음에 "2024-1-1213"란부터 "2024-1-1223"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 4]

유해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목록(제13조제1항 관련)

가. 유독물질

	화학물질의 명칭		유해성분류(Code)		표시사항(Code)*				
고유번호		CAS번호	항목	구분	그림문자		유해·위 험문구	M계수	UN No.
97–1–1 45	시안아미드 [Cyanamide]	420-04-2	급성독성-경구(3.1) 급성독성-경피(3.1) 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 피부 과민성(3.4) 발암성(3.6) 생식독성(3.7) 특정 표적장기 독성-반복 노출(39) 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	3 1 1 2 2 2 2	GHS05 GHS06 GHS08 GHS09	위험	H301 H311 H314 H317 H351 H361 H373 H411	_	2811
2017-1 -762	리모넨[<u>Limonene</u>]	5989-27-5, 138-86-3, 5989-54-8	인화성 액체(2.6) 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 피부 과민성(3.4) 수생환경 유해성(4.1) 급성	3 2 1 1	GHS02 GHS07 GHS09	경고	H226 H315 H317 H400	_	2052
2017–1 –785	2-프로펜산 4-벤조일페닐[4-B enzoylphenyl 2-propenoate]	22535-49 -5	심한 눈 손상/눈 자극성(3.3) 피부 과민성(3.4) 수생환경 유해성(4.1)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	2 1A 1 1	GHS07 GHS09	경고	H319 H317 H400 H410	_	_
2018–1 –837	(T-4)-[3-(디메틸 아미노-κN)프로필 -κC]디메틸인듐 [(T-4)-[3-(Dimet hylamino-κN)prop yl-κC]dimethylind ium]	-1	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(2.12) 급성독성-경구(3.1) 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	3 3 1	GHS02 GHS05 GHS06	위험	H261 H301 H314	_	-
2021-1 -1068	2-프로핀-1-일 1H-이미다졸-1- 카르복실레이트[2 -Propyn-1-yl 1H-imidazole-1- carboxylate]	83395–38 –4	급성독성-경구(3.1) 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 피부 과민성(3.4) 수생환경 유해성(4.1)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	3 1 1 1	GHS05 GHS06 GHS09	위험	H301 H314 H317 H400 H410	-	-
2022–1 –1095	(±)-노르니코틴[(±)-Nornicotine]		급성독성-경구(3.1) 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	3 2	GHS06 GHS09	위험	H301 H411	_	-

	화학물질의 명칭	CAS번호	유해성분류(Code)		표시사항(Code)*				UN
고유번호			항목	구분	그림문자	신호어	유해·위 험문구	M계수 	No.
2024-1 -1213	트리플루오르화 인[Phosphorus trifluoride]	7783–55–3	고압가스(2.5) 급성독성-흡입(3.1) 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	2 2 1A	GHS04 GHS05 GHS06	위험	H280 H330 H314	-	-
2024-1 -1214	클로로포름산 2-프로핀일 [2-Propynyl chloroformate]	35718-08-2	인화성 액체(2.6) 급성독성-경구(3.1) 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	3 3 1	GHS02 GHS05 GHS06	위험	H226 H301 H314	_	_
2024-1 -1215	1,4-디이소시아나 토벤젠 [1,4-Diisocyanat obenzene]	104-49-4	급성독성-흡입(3.1) 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 호흡기 과민성(3.4) 피부 과민성(3.4) 특정 표적장기 독성-1회 노출(38) 수생환경 유해성(4.1)만성	2 2 1 1 3 2	GHS06 GHS08 GHS09	위험	H330 H315 H334 H317 H335 H411	_	_
	무수아세트산[Ace tic anhydride]	108-24-7	인화성 액체(2.6) 급성독성-경구(3.1) 급성독성-흡입(3.1) 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	3 4 3 1B	GHS02 GHS05 GHS06	위험	H226 H302 H331 H314	_	1715
2024-1 -1217	염화 알루미늄[Aluminiu m trichloride]	7446-70-0	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	1	GHS05	위험	H314	_	1726
2024-1 -1218	이산화 알루미늄 나트륨[Aluminium sodium dioxide]	1302-42-7	급성독성-경구(3.1) 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 수생환경 유해성(4.1)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	4 1A 1	GHS05 GHS07 GHS09	위험	H302 H314 H400 H410	_	2812
2024-1 -1219	1,3-디페닐구아니 딘[1,3-Diphenylg uanidine]	102-06-7	급성독성-경구(3.1) 심한 눈 손상/눈 자극성(3.3) 생식독성(3.7) 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	3 1 2 3	GHS05 GHS06 GHS08	위험	H301 H318 H361 H412	_	_
2024-1 -1220	디이소프로필아민[N-(1-Methylethyl)- 2-propanamine; Diisopropylamine; DIPA]	108-18-9	인화성 액체(2.6) 급성독성-경구(3.1) 급성독성-흡입(3.1) 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	2 4 3 1	GHS02 GHS05 GHS06	위험	H225 H302 H331 H314	_	1158

	화학물질의 명칭	CAS번호	유해성분류(Code)		표시사항(Code)*				UN
고유번호			항목	구분	그림문자	신호어	유해·위 험문구	M계수	No.
2024-1 -1221	염화 시아누르산[Cyanu ric chloride]	108-77-0	급성독성-경구(3.1) 급성독성-흡입(3.1) 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 피부 과민성(3.4)	4 2 1 1	GHS05 GHS06	위험	H302 H330 H314 H317	_	2670
2024-1 -1222	황화 카르보닐[Carbony I sulfide]	463-58-1	인화성 가스(2.2) 고압가스(2.5) 급성독성-흡입(3.1)	1 2 3	GHS02 GHS04 GHS06	위험	H220 H280 H331	_	-
2024-1 -1223	수산화 리튬[Lithium hydroxide]	1310 -6 5-2	급성독성-경구(3.1) 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	3 1B	GHS05 GHS06	위험	H301 H314	_	2680

비고

- * 예방조치문구는 [별표 1] "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"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
- *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 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.